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1322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2021. 9.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176,0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76,0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4. 11. 7. C에게 만기일 2016. 5. 5.,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2) E(변경 전 상호: F)는 2015. 10. 22. D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1. 3.경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2. 19. E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21. 3. 22.경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57988호 양수금 사건), 위 사건에서 2022. 1. 11. 'C은 원고에게 7,382,740원과 그 중 2,773,451원에 대하여 2021.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22. 8. 2.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원금 잔액	인수 전 이자금액	인수 후 이자금액	합계
종	2,773,451원	4,403,218원	999,350원	8,176,019원

나. 이 사건 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G은 2021. 3. 13.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H가 있었다.

2) 피고와 C, H는 2021. 9.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15.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000만 원이었다. 피고는 2021. 11. 24.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2022. 6. 16.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상황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대출채무 외에 대한채권관리대부에 977,000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서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C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사해의사도 추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4,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C에게 1,500만 원, H에게 1,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고, ② 피고는 오랜 기간 C과 교류가 없다가 G의 장례식 때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리 당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어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그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1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2. 6. 16.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00만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C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인 구체적 상속분 상당액,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1/3을 공제한 나머지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0,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C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은 13,366,666원[= (60,100,000원 - 2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인데, 위 공동담보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22. 8. 2. 기준 원리금 액수 8,176,019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8,176,0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8,176,0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

부동산 목록

(1층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 주택

1층 내지 2층 각 47.44㎡, 지하 48.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대 6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호 벽돌조 48.8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6분의 42.84㎡

